

하나-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거래약관

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(주) 하나은행(이하"은행"이라 합니다.)과 하나-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(이하 "이 거래"라 합니다.)을 이용하는 손님(이하" 신청인"이라고 합니다.)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적용)

이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외에 "예금거래 기본약관", "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", "외환거래기본약관", "하나휴대폰문자통지 서비스이용약관", "하나-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" 및 "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 거래약관"을 적용합니다.

제 3 조 (가입대상)

이 거래의 가입대상은 당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제 4 조 (서비스 이용 등록)

신청인이 이 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정한 서식 또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 5 조 (거래 가능 계좌)

이 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며, 예금과목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 및 MMDA(개인)으로 합니다.

제 6 조 (송금정보 등록)

신청인은 이 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등록된 송금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(해외송금 자동서비스)

1. 최소지정 및 송금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) 지정일 송금방식의 경우 최소 USD 50에서 최대 USD5,000까지 지정 가능합니다.
 - 2) 잔액전체 송금방식의 경우 최소 KRW 50,000에서 최대 KRW 5,000,000까지 지정 가능합니다.
2. 해외송금 자동서비스는 아래 송금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1)지정일 송금방식 : 약정한 날짜에 약정금액과 수수료 금액 합계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경우 약정금액 송금
 - 2)잔액전체 송금방식 : 최소지정금액과 수수료 금액 합계 이상 입금 시 잔액전체송금

제 8 조 (자동이체 출금의 처리 기준)

1. 송금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1) 지정일 송금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된 금액과 수수료 합계 이상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 약정된 날짜의 오전에 송금처리 합니다.

- 2) 잔액전체 송금방식을 선택한 경우 송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①예금잔액을 기준으로 "최소 지정 금액"과 수수료합계의 초과여부를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오전 중에 자동으로 해외송금 합니다.
 - ②오전에 정상적으로 송금이 취결되지 않은경우 오후에 재송금 할 수 있습니다.
 - ③오전에 정상적으로 송금이 되었으나, 오후에 "최소지정금액"과 수수료합계 금액 이상이 지정계좌에 재입금 되는 경우 익영업일에 송금처리되며 연간 송금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.
2. 처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송금 처리됩니다.
3. 전산 문제 및 기타 오류로 인하여 오전 시간에 정상적으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에 재송금 할 수 있습니다.

제 9 조 (송금결과의 통보)

이 거래의 결과는 MTCN을 포함하여 송금 즉시 지정한 핸드폰번호로 통보됩니다.

제 10 조 (해외송금 수수료 및 환율)

1. 이 거래의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는 "하나-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수수료표"를 적용하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2. 이 거래는 출금 당시 고시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1 조 (기 송금 거래의 변경 및 취소)

1. 신청인은 이 거래를 이용하여 실행한 송금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수취 국가에서 수취인이 거래제한대상자로 분류되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래는 취소됩니다.
2. 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국가 이동(주 이동포함) 등으로 수취가 불가능함에 따른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을 때, 은행은 해외의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실제 해외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에서 은행의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
제 12 조 (거래 정보의 변경)

1. 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소정양식에 의한 "하나-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의뢰(변경/해지)서" 를 제출해야 하며, 그 효력은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.
2. 문자메세지를 수신하는 번호는 반드시 핸드폰번호로 등록해야 하며, 핸드폰번호 변경 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제 13 조 (거래의 중단)

1. 신청인이 외국환거래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얻지 못하였거나 신고서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신고서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
이 거래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.

2. 계좌의 지급정지, 송금한도 초과 등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이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 14 조 (책임)

1. 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한 송금정보의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
3. 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수취 국가 및 웨스턴유니온사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

다만,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15 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1. 이 약관의 내용과 위 제 2조의 약관내용이 서로 다른경우 이 약관이 우선적용 됩니다.
2. 이 약관 및 기타약관들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약정이 없으면 관계법규를 적용합니다.

제 16 조 (관할법원)

이 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